

<p>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p>	<p>교통사업특별회계가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당초 교통분야의 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80년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90.1.1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22조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91.12.14. 주차장법 규정 개정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92.10.23.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설치이전의 일부 세입항목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토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p>
<p>4. 서울特別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委員長代理 金喜甲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고자 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交通局長께서는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諸他龍 交通局長입니다. 油印物을 통해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p>	<p>현행 규정은 특별회계 설치 이전인 '93.7.31.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 및 '92.12.31.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운수과징금·과태료를 특별회계의 세입에서 제외함에 따라 동일한 세입이 부과시점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되는 회계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이전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및 운수과징금·과태료 체납금액 중 조례개정안 시행일시인 '96.1.1. 이후 징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93.7.31.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은 '95.8월 현재 20억 4,900만원이며 '92.12.31.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운수과징금·과태료는 '95.8월 현재 5억 3,900만원입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비용은 시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원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신호등의 설치·관리·보수, 차선의 도색·유지</p>
<p>(報告)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2.10.23. 제정·공포되어 '93.1.1.부터 우리 시 교통국, 교통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을 본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운영하였고, '93.12.31. 본 조례를 개정하여 교통방송본부의 예산까지 포함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특별회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회계 운용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확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현재 교통관리계정·주차관리계정 및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을 교통관리계정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교통관리계정은 교통국의 교통기획과·운수1과·운수2과·주차계획과(교통시설계) 및 교통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관리계정은 교통국 주차계획과(주차계)의 세입·세출에 관해 규정하고 양 계정별로 세입·세출예산을 구분 운영하고 있는 바 교통국 4개 과의 예산 운용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함으로써 세입·세출예산의 통일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을 확보하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p>	<p>셋째,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비용은 시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원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신호등의 설치·관리·보수, 차선의 도색·유지</p>

관리 및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관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교통관리계정에 의한 사업 중 교통체계개선사업 버스전용차선, 일방통행 및 정체지점 개선사업에 신호등·차선·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95년 중 재배정금액은 6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함으로써 기존 교통관리계정의 유사한 업무와의 종합적인 조정과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법령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61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하였습니다.('93-219억, '94-158억, '95-242억)

내재,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자치구로 이관함에 따라 소요비용 세입 및 관련 세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당초 경찰의 권한이었으나 '90.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서울의 경우 구청장)에게도 단속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견인보관소의 운영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91.6.21. 우리 시가 3개 보관소(마장동, 여의도, 잠실)를 인수하였고, '91.10~'91.12월 중 3개 보관소(서부, 봉천, 북부)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6개 보관소의 운영을 시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유는
○서울시 전역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개 보관소를 4, 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러나 '96.1.1.부터는 사무주체와 비용부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관소를 구청장이 운영토록할 계획인 바, 이에 따라 현행 주차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예산 조항을 삭제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세입조항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 중 서울특별시 수입분이며

○세출조항은 주차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부문 인건비,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내용대로 통과되어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 및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喜甲 다음은 專門委員,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泰鎬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報告)

1. 제안자

○서울특별시장

2. 제안이유

○기존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방식이 교통관리계정, 주차관리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각각 독립된 계정으로 하던 것을 주차관리계정을 교통관리계정에 통합하고

○그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련 분야 예산의 지원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에서 하던 것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사업운영계정에 편성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조례 제5조(주차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를 삭제하고 본 규정을 조례안 제4조의 세입과 세출부분에 각각 삽입 함.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토록 함(조례안 제4조)

4. 검토요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정을 두는 것은 특정사업을 위하여 특정 수입으로 세입을 편성하고 그 분야에만 집행토록 하여 사업의 소관 영역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그 동안 주차담당관실 업무로